

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
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이영실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 외 23명이 공동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- 본 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규모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위원회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, 또한 녹색건축물의 확대 및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의무를 확대하고, 온실가스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-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(안 제2조)하고,
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연임 규정을 두 차례에
서 한 차례로 축소(안 제10조)하였습니다. 또한 녹색건축물
의 확대 및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정비(안 제17
조·제18조)하고,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, 기후대응
기금의 설치 및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
(안 제28조~제30조)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
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